

[별표 2]

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9조제3항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법조문	과태료금액
1. 법 제15조의 규정(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)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20만원
2. 법 제15조의 규정(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)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60만원
3. 법 제15조의 규정(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)에 의한 조사·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20만원